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반호 관련 98

제안년월일: 2018년 12월 17일 제 안 자:기 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현함에 있어, 행정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행복 실태 조사와 행복 격차 지표를 별도로 개발·관리하기 보다는, 행복지수 측정결과에 따라 통합해 분석·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
 (안 제10조와 제12조 삭제, 안 제11조).
- '행복영향평가'와 '행복증진교육' 등은 의무 규정 보다는 재량 규정으로 운영하도록 함(안 제14조 및 안 제16조).
- '행복인지 예산'은 '행복' 가치의 반영여부를 예산 편성에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,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의 의무로 명시함(안 제15조).

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8조제2항 중 "응해야"를 "최대한 협조해야"로 한다.
- 안 제10조를 삭제한다.
-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.
 -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,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- 안 제12조를 삭제한다.
- 안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.
- 안 제14조제1항 중 "해야 한다."를 "할 수 있다."로 하고,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.

안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,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예산 운영)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검토하여,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안 제16조제1항 중 "교육을 실시한다."를 "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"로 하고, 안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.

안 제17조를 제15조로 하고,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위탁)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·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·사회단체,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	제8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.
제10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시민 행복 실태 및 행복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 행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.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u>〈삭 제〉</u>
제11조(행복지수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 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(이하 "행복지표"라 한다)를 개발·보급한다.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,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.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축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.	제10조(행복지수 등) ① ~ ② (제정안과 같음)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축 정하고,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 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.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
	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에 반영해야 한다.
제12조(행복 격차 지표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1조에 따른 행복지수 측정을 통해 행복 격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. ② 시장은 행복 격차 지표의 측정 결과와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.	<u>〈삭 제〉</u>
<u>제13조(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)</u> ① ~ ③ (생략)	제11조(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~ ③ (제정안과 같음)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(행복영향평가)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"행복영향평가"라 한다) 해야 한다.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·방법·시기 등에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2조(행복영향평가)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"행복영향평가"라 한다) 할 수 있다. ② (제정안과 같음)
제15조(행복인지 예산) ①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<u>분석하고 이를</u>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행복인지 예산을 실시할 수 있다.	제13조(예산 운영)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검토하여,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② <u>시장은 행복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 등을</u> 제시하기 위하여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.	<u>〈삭 제〉</u>
제16조(행복 증진 교육)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,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.	제14조(행복 증진 교육)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,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가정,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 시되도록 노력한다.	② (제정안과 같음)
제17조(위탁)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, 제11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 ·측정, 제12조에 따른 행복 격차 지표 개발 및 측정, 제14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15조(위탁)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·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1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·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·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.	<u>제16조(협력체계 구축)</u> (제정안과 같음)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u>제17조</u> (시행규칙) (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행복"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.
 - 2. "행복 격차"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나 생활권역에서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를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① 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와 환경을 조성한다.
-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
- 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.
-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.
- 제5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
 - 2.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
 - 3.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
 - 4. 행복 증진을 위한 민·관·산·학 협력체계 구축방안
 - 5.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방안
- 6.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- 7.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·제도의 개선
- 8. 행복 증진 교육·홍보의 활성화 방안
- 9.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-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-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8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·사회단체,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.

- 제9조(자치구와의 협력)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행복 증진 사업들이 자치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예산에 연계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.
- 제10조(행복지수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(이하 "행복지표"라 한다)를 개발·보급한다.
-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.
-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,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- 제11조(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사회·경제·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
 - 2.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·평가
 - 3.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
 - 4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
 - 5. 행복 격차 해소방안
 - 6.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행복영향평가)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"행복영향평가"라 한다) 할 수 있다.

-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·방법·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예산 운영)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검토하여,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제14조(행복 중진 교육)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,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가정,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.
- 제15조(위탁)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·측정과 제12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·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·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.
-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